

2024

극동대학교

신입학(3월)

재외국민과 외국인

수시 모집요강

-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
- 전 교육과정 이수(재외국민/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극동대학교
FAR EAST UNIVERSITY

W
W
W
.
K
D
U
.
A
C
.
K
R

< 목 차 >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2. 전형일정	2
3. 원서접수 안내	2
가. 창구 및 우편 접수	
나. 추가서류 제출	
4. 전형료	3
5. 전형방법	3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나. 서류평가	
다. 선발방법	
6. 전형유형별 모집 안내	4
•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재외국민/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7. 지원자 유의사항	9
8. 신체검사	10
9. 인성검사	11
10. 기타 안내	12
기숙사 안내 / 교통 안내	
[서식]	13
• 서식1: 입학원서	
• 서식2: 수학기간기록표	
• 서식3: 부모(보호자) 외국 체류기간 기록표	
• 서식4: 학력조회자료	
• 서식5: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	모 집 단 위		입 학 정 원	모 집 인 원		
				재외국민과외국인 (입학정원2%이내)	북 한 이 탈 주 민	전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과외국인
인재개발 대학	인재개발학부	호텔외식조리학전공	150	총 4명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	모집인원 제한없음	모집인원 제한없음
		사회복지학전공				
		군사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특수교육학과	초등특수교육전공	24			
항공대학	항공운항서비스학과		45			
	항공운항학과		35			
	항공모빌리티학과		47			
	항공학부	항공안전관리학전공	30			
		헬리콥터운항학전공				
과학기술 대학	과학기술학부	AI컴퓨터공학전공	60			
		친환경에너지공학전공				
		해킹보안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				
의료보건 과학대학	방사선학과		31			
	임상병리학과		35			
	작업치료학과		45			
K-컬처 혁신대학	미디어영상제작학과		21			
	디자인학과		21			
	만화·애니메이션학과		40			
	연극연기학과		45			
	사회체육학과		30			
글로벌대학	호텔경영학과		106			

※재외국민외국인(입학정원 2%이내) 전형은 일반학과에서 총 4명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함

※북한이탈주민과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외국인은 모집인원 제한 없이 선발

※입학 후 학사조직 개편으로 모집단위의 신설, 통·폐합(모집중단), 명칭변경 등이 있을 수 있음.

2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및 학과	비고	
원서 접수	1. 인터넷 2. 창구	2023.09.11.(월) 09:00 ~ 09.15.(금) 17:00	1. 인터넷: 유웨이어플라이 2. 창 구: 본교 입학처	마감일을 제외한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추가서류 제출	방문제출	2023. 09.11.(월) ~ 09.22.(금) 17:00	극동대학교 입학처	모집요강 내 전형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등기우편제출		(우) 27601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극동대학교 입학처 귀중		
신체검사	항공 운항 학과	항공신체검사 1종 (화이트카드)	2023. 03. 01 이후 검사결과만 인정	국토부 지정병원	지원자 개인 예약·검사
		※ 항공학부 입학 후 헬리콥터운항전공 선택예정자는 반드시 항공신체검사 적합판정을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개인확인)			
합격자 발표	전체학과	2023.11.15.(수) 14:00 예정	본교 입학홈페이지 (ipsi.kdu.ac.kr)		
합격자 등록	온라인 문서등록 (최초합격자)	2023.12.18.(월) 09:00 ~ 12.21.(목) 17:00	본교 입학홈페이지 (ipsi.kdu.ac.kr)	온라인 문서등록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됨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3.12.21.(목) 20:00 ~ 12.29.(금) 17:00			
		본 등록	2024.02.07.(수) 09:00 ~ 02.13.(화) 17:00	지정은행 수납	온라인 문서등록 완료 후 본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됨

※ 입학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마감일 마감시한까지 도착해야 접수 가능(마감일 마감시한 이후 도착한 원서는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등록확인 문서등록 안내 : 본교 수시모집 합격자(최초/충원)는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확인 문서등록을 완료한 후 등록금은 본 등록기간에 납부

※ 합격자 등록금 납부고지서 : 등록금 납부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이전 본교 입시홈페이지(ipsi.kdu.ac.kr)에서 확인(출력) 후 지정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충원합격자 발표 : 최초합격자와 충원합격자의 등록포기 결원에 대해 예비후보 성적순에 따라 발표함

※ 모든 합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격이 유효함

3 원서접수 안내

가. 창구 및 우편접수

- 1) 본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창구에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추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2)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하며 발송 후 전화로 도착확인을 하여야 함.
- 3) 미비 된 원서 및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절 접수하지 않으며, 누락 및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추가서류 제출

- 1) 지원자는 제출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되므로 마감시한을 지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2)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원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제출서류 도착을 확인하도록 함.
- 3) 배달 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접수마감 후 도착한 원서 및 추가서류는 일절 접수하지 않음.
- 4) 추가서류는 제출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5)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 7) 공식적인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성적, 학력 등의 기재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8) 추가서류는 기한 내에 미제출시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하므로 빠짐없이 제출해야함.
- 9)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지원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졸업 또는 수료 증명서를 입학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10) 제출주소: (우)27601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극동대학교 입학처 귀중 **【입학원서 재중】**

4 전형료

전형유형	전형료
전체 전형	면제

5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전형	선발모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비율)
			서류전형(고등학교 성적)
외국인	일괄합산	100%	1,000점(100%)

※고등학교 전체 성적의 백분위 점수를 환산하여 성적 사정함

나. 성적 환산표

(※고등학교 성적을 백분위로 환산 불가한 경우 환산점수 최하점 부여)

연번	고등학교 백분위 점수	환산점수	연번	고등학교 백분위 점수	환산점수
1	100	800	10	82 ~ 84 미만	674
2	98 ~ 100 미만	786	11	80 ~ 82 미만	660
3	96 ~ 98 미만	772	12	78 ~ 80 미만	646
4	94 ~ 96 미만	758	13	76 ~ 78 미만	632
5	92 ~ 94 미만	744	14	74 ~ 76 미만	618
6	90 ~ 92 미만	730	15	72 ~ 74 미만	604
7	88 ~ 90 미만	716	16	70 ~ 72 미만	590
8	86 ~ 88 미만	702	17	70 미만	580
9	84 ~ 86 미만	688			

다. 선발방법

- 1)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성적순으로 선발함.
- 2)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3) 기타 사항은 본교 2024년도 대학입학 사정지침에 의하여 처리함.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외국민】**

■ 지원자격(중·고교과정의 일부를 국외학교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1) 기본 학력 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2) 일반적 자격기준

구분	지원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년	3년	3년	-	3년	3년	3년	3년
해외근무자 (공무원,상사 직원,외국정 부·국제기구) 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절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1,095일)(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 해외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4) 부모의 근무, 거주(영주) 및 체류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 용
해외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기간	•학생: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5)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및 형식

구분	범위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상사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근무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되며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함.	

6) 지원자격 심사 공통 안내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에 적용)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인(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 지원자격

1) 기본 학력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2) 일반적 자격기준

구분	지원자격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3) 재학 기간 기준

-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 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수한 '외국' 의 고등학교과정(3년 전체)을 의미함.
 - 외국 국적 취득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4) 보호자 동의 조건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 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 과정을 3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지원자격

1) 기본 학력요건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전교육과정 이수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하여야 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 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3) 학생 및 보호자 등의 조건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4) 어학자격: 외국인 지원자만 해당되며 과정별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과정	어학 지원 자격
한국어 사용과정 입학	- TOPIK 3급 이상 - 본교 한국어교육기관 3급 이상 수료한 자 - 본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상당) 합격자(별도 계획 의거, 자체시험 시행 예정) *졸업 전 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함
영어 사용과정 입학	- TOEFL(IBT 71, CBT 197, PBT 530), IELTS 5.5, TEPS 600 이상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
※ 어학능력 증명서류는 2023년 3월 이후에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	

북한이탈주민

■ 지원자격

1) 기본 학력요건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예정)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 전형 지원자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7

제출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부수
재외국민및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⑥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⑦ 출입국사실 증명서(부모, 학생) ⑧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⑨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⑩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⑪ 해외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⑫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⑬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⑭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⑮ 여권사본(부모, 학생)	각 1부
전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⑥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⑦ 신분증 사본 ⑧ 재정보증서류(외국인 제출서류) ⑨ 한국어능력증명서(TOPIK 3급 이상)	각1부
북한이탈 주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③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학력확인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각1부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류 발행기관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공증기관이 공증한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상 이름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공인기관의 공증서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영사)관의 공증을 권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재외 한국학교 출신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 등은 해당 학교장의 확인(직인 날인) 만으로도 제출 가능함.

8

지원자 유의사항

- 가. 지원자는 반드시 1개의 모집단위로 지원하며 계열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함.
- 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에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제출서류에 대해 추후 별도의 조회를 거쳐 위조 혹은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라.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가 불가함.
- 마.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을 한 이후, 관련 기관의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사.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9

신체검사

가. 해당학과: 항공운항학과

- 1) 신체검사 대상자: 항공운항학과
- 2) 인정되는 신체검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검사(민간 화이트카드: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
- 3) 신체검사 일정 및 결과 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검사(민간 화이트카드)

- 신체검사 신청: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에 수험생이 예약 및 수검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후 결과물 제출
- 결과제출: 추가 제출서류 마감일 까지 도착분만 인정
- 제출서류: 2023. 3. 1 이후 검사결과만 유효
 - ①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증명신청서 판정결과 "적합"자만 지원가능, 조건부적합자는 입시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② 항공신체검사증명서(화이트카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 안내: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홈페이지(<http://www.asmak.or.kr/>) 항공신체검사 참고

- 4) 신체검사 관련 유의사항
 - 가) 신체검사 비용은 수험생 부담
 - 나)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만 반영하며, 미 실시(결과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 다)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우리 대학교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라)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합격을 받아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유효기간은 화이트카드와 동일)
- 5) 항공학부 입학 후 헬리콥터운항전공 선택예정자는 반드시 항공신체검사 적합판정을 확인 후지원바랍니다.(개인확인)

[서식 1]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 입학원서

수험 번호

*대학에서 작성

[illegible]